

# 신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02년 9월 1일 제정)  
(2003년 5월 1일 1차 개정)  
(2008년 3월 26일 2차 개정)  
(2010년 12월 6일 3차 개정)  
(2011년 4월 8일 4차 개정)  
(2011년 6월 7일 5차 개정)  
(2012년 6월 12일 6차 개정)  
(2015년 2월 11일 7차 개정)  
(2015년 7월 9일 8차 개정)  
(2016년 10월 4일 9차 개정)  
(2018년 7월 9일 10차 개정)  
(2019년 10월 21일 11차 개정)  
(2021년 6월 28일 12차 개정)  
(2023년 12월 13일 13차 개정)  
(2024년 4월 4일 14차 개정)  
(2024년 12월 19일 15차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신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교육을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 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제 7, 8, 9호의 학교규칙, 제 31조의 학생 징계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6조【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와 동시에 사회생활규범을 익혀 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4. 학교구성원은 제3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제3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7.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학생의 책임】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3.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4. 학생은 일체의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
5.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가할 책임이 있다.

## 제 2 장 학생생활

### 제 1 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12조【양성평등】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사이버 따돌림 등 일체의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외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나 교감, 교장에게 즉시 알리고 교장의 명에 따른다.

**제14조【동아리 활동】**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부와 생활지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교장의 허가를 받은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교장의 허가를 받은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5조【여가활동】**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도박,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금한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표현의 자유】**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별도 지정 운영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한다.

## 제 2 절 복 장

**제19조【외모】**신체 위생 상태 및 복장 세탁 상태를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하며 외모를 단정히 한다.

**제20조【복장】**학생은 자유 복장을 하되 여름, 봄과 가을, 겨울을 고려한 옷을 권장한다.

1. 복장은 활동하기 편한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교과서가 들어가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실내화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뒤가 막힌 형태의 실내화를 착용한다.
7. 색조 화장은 피부보호 목적 외에는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하지 않도록 한다.

## 제 3 절 출결사항

**제21조【목적】**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재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하며 세부 사항은 신하초등학교 교칙에 따른다.

**제22조【등 학교시간】**등교시각은 09시 00분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청소활동을 포함한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제23조【지각 조퇴】**지각은 1교시 시작 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는 청소활동을 제외한 교과 및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24조【학교 대표 및 경연대회 참가】**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25조【학업중단 숙려 제도】**학업중단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 부터 7주(49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

## 제 4 절 교외생활

**제26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거나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활동한다.
3.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 법에 저촉되거나 정신□신체적 안전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제27조【여행】**학생이 국외를 여행(연휴 및 방학 기간)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알린다.

**제28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지도
5. 휴대전화 및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지도

## 제 5 절 정보통신

**제29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학습 과제 또는 스스로 하는 학습을 한 후에 이용한다.
9.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

10.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제30조【통신기기(휴대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 소지 여부 : 학생의 휴대폰 교내소지는 허용하되 등교 후 휴대폰 전원을 끄고 본인이 보관한다.
2. 사용시간 및 장소 관련 규정
  - 가. 사용 가능한 시간 : 원칙적으로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은 금하되 학생의 특별한 사유로 사용해야 할 시에만 교사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다.
  - 나. 사용 장소 : 복도, 건물 밖(그 외의 장소는 불가) 등의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한다.
  - 다. 규정을 어길 시 제 71조 훈육의 [물품관리 보관 규정]에 따른다.

## 제 6 절 학생자치활동

**제31조【학생자치활동】**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2.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 학생대표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입후보 학생은 본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 나. 교칙위반(학교폭력, 교권침해, 생활교육위원회 등)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은 자격에 제한을 둔다.
8. 학생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가. 학생생활규정 위반이나 학교폭력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학생
  - 나.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 제 3 장 학생생활지도

### 제 1 절 생활지도

**제33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 점검을 먼저 하고, 안전에 유의해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감전□공사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조□종례 시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녹색어머니회, 실버폴리스, 어머니폴리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해 진로지도를 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교과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연 10시간 이상 확보)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5조【교외생활 지도】**

1.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교내 및 학교주변 위험취약지구를 순회지도하여 학생폭력 및 비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교사는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를 위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제36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 2 절 시 상

**제37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할 수 있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
2. 예체능부문 -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3. 모범□근면부문 - 기본이 바로 선 어린이상, 공로상 등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38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39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 제40조【시상기준】

1. 학력부문 : 교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2. 예체능부문
  - 가.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나.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다.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3. 모범□□면부문
  - 가. 공로상 : 교내□□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봉사공로상, 예체능공로상, 특별공로상)
  - 나. 인성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다.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라. 기 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특별상 : 교내□□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 4 장 징계

#### 제4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두며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 및 회복적 생활지도를 위해 운영하되 세 부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 담당 부장, 6학년 부장, 5학년 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지도 담당 부장으로 한다.
3.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선도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선도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선도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선도 공고 시에는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 제42조【기능】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3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4.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제44조【심의】**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5조【재심의】**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학생·학부모 또는 교사가 불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이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경우 재심에 부친다. 재심의가 결정되면 7일 이내 재심을 해야 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2. 재심의 여부 결정
3. 재심의
4. 학교장 조치

**제46조【종류】**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7조【방법】**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4. 출석정지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5.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48조【내용】

1. 학교 내의 봉사 -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
  - 가. 교내의 환경 정화활동(쓰레기 줍기 및 복도 계단청소)
  - 나.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 다. 교재 □교구 정비
2. 사회 봉사 -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
  - 가. 지역 사회 봉사활동
  - 나. 복지시설 일손 돕기
3. 특별교육 이수 -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
  - 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학교폭력,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 다.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Wee클래스,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Wee클래스 등 본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마련
  - 바.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사.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아.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가.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
  -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다.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

#### 제49조【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항	내 용	선도 기준			
		학교내 교육,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지
1	연중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5회 이상 하는 학생	○		○	
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3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4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5	학칙에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소지, 배포한 학생	○		○	
6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7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9	학교 시설에 무단 침입하거나 교사 허가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			
10	징계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학생	○	○	○	○
11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12	도박을 한 학생	○	○	○	
1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평가지 등)	○	○	○	
14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15	교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16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17	타인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 등의 행위를 하는 학생	○	○	○	
18	교직원에게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은 학생	○	○	○	

**제50조【심의 확정】**선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1조【통보】**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처분 내용을 서면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2조【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선도처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처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제 5 장 징계 외의 기타지도 방법

### 제54조 【방법】

1. 학생지도 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 한다.
2. 훈계 지도 방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

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3.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 6 장 상담실 및 장애학생의 보호

**제55조【전문상담교사 배치】**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제56조【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제 7 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7조【구성】** 위원회는 8인서 ~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권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1.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2.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제58조【구성방법】

1.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9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 8 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및 정보공시

**제6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신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7장에 의거하여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61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2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3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4조【공포 및 정보 공시】**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통신문(SMS 포함)을 발송한다.

**제65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6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 9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 제 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 67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 2절 생활지도의 방식

#### 제 68 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 69 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0 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71 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담당교원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p>* 지각의 기준 : 9시 10분 ※ 별도의 내부계획을 통해 지정장소 및 학생지도 담당 교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p>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혹은 최근 한달 내에 반복적으로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 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및 일과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및 쉬는시간에 교육 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주의 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70조 제3항에 따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 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한차례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 관 · 수업 종료 후 상담 혹은 성찰글쓰기를 한 뒤 되돌려 줄 수 있다.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 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 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 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 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 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 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자예시>  
000학생이 0월0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휴대폰을 사용하여 학생물품 분리 보관 규정에 따라 분리 보관 후 반환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을 인지시켜 주시고 함께 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 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 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당일 제출 원칙)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배상 및 청소)
    -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 및 야외에 출입하거나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오는 경우 해당 구역 청소
    - 학교 시설 및 물품 손괴 시 원상복구 및 배상

**제 73 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74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5 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76 조【기타 사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제정
2. (1차 개정) 2003년 4월 31일
3. (2차 개정) 2008년 3월 26일
4. (3차 개정) 2010년 12월 6일
5. (4차 개정) 2011년 3월 28일 교무회의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2011년 4월 8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6. (5차 개정) 2011년 5월 26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11년 6월 7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7. (6차 개정) 2012년 6월 12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12년 6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8. (7차 개정) 2015년 2월 3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15년 2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9. (8차 개정) 2015년 7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0. (9차 개정) 2016년 10월 4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1. (10차 개정) 2018년 7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2. (11차 개정) 2019년 10월 2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3. (12차 개정) 2021년 7월 15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4. (13차 개정) 2023년 12월 4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23년 12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5. (14차 개정) 2024년 4월 4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6. (15차 개정) 2024년 11월 12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24년 12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